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한정애·이학영·송옥주

서영교 • 정성호 • 문진석

허종식・황 희・허 영

김주영 · 안도걸 · 임오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,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 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,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

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제4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"를 "1 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 교 1학년 이하)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1조(휴직) ① (생 략)	제71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	②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		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		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			
명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	4. <u>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</u>		
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	학년 이하(대통령령등으로 정		
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	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		
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	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		
된 때	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		
	교 1학년 이하)의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